

『법학논총』 논문 발행 규정

제정: 2007. 10. 5
개정: 2012. 12. 20
개정: 2015. 10. 1
개정: 2016. 2. 1
개정: 2017. 2. 27
개정: 2018. 2. 27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『법학논총』을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전문논문집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논문집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학논총의 발행) ① 『법학논총』은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8.2.27.>
단,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본호나 증호를 발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2.27.>

② 『법학논총』의 발간일자는 매년 3월 30일, 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30일로 한다. <개정 2018.2.27.>

③ 『법학논총』은 100부 이상 발행하며,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 <개정 2017.2.27.>

제3조(원고의 게재) ① 다음 각호의 투고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게재결정을 얻어 『법학논총』에 게재한다. <개정 2015.10.1.>

1. 연구소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및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
2.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의 교원 및 법학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의 논문
3. 초빙연구원이거나 이었던 자의 논문
4. 법률분야의 실무종사자의 논문
5. 대학원생으로서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의 논문
6.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논문 <개정 2015.10.1.>

② 게재 원고에는 국문 제목, 국문 초록, 국문 주제어 및 영문 제목, 영문 초록, 영문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하며, 각 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서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③ 투고 원고는 기왕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일이 없으며, 전문 학술 논문으로서 『법학논총 원고 작성 요령』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④ (삭제) <개정 2016.2.1.>

제4조(별쇄본 및 전자출판) ①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『법학논총』 2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

공한다.

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. 다만,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 부담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.

③ 『법학논총』은 인쇄본 출판과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의 전자출판을 병행한다. <개정 2015.10.1.>

부칙[2007.10.5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기존의 단국대학교 『법학논총』 편집규정 중 논문집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.

부칙[2013.1.1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기존의 단국대학교 『법학논총』 편집규정 중 논문집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.

부칙[2015.10.1.]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6.2.1.]

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7.2.27.]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8.2.27.]

이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